

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자료

[illegible]

※ 비고

「구분」란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‘국가유공자’로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는 ‘보훈보상대상자’로,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‘지원대상자’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